W-7.1.1 환자권리존중 및 환자 사생활 보호

Q: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환자의 요구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?

- 1) 내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제한 (입원 사실, 병실조회,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)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다. (원 무과)
- 2) 사생활보호요청서 작성 하여 원무과 제출하게 한다.
- 3) 사생활보호 요청 즉시 의무기록에 등록,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.
- 4) EMR에 "사생활보호" 표시되고 입원환자의 경우 병실번호 밑에 녹색 줄 및 사생활보호 표시된다.
- 사생활보호 요구 환자

입원 사실 보안, 공공장소에 환자 정보 노출 금지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본인 이외 사본발급 제한 사생활 보호요구 해지 시 신분증 또는 환자 팔찌 이용하여 확인하고 윤리위원회 간사(내선 1010)에게 연락하여 해지

- 환자의 신체노출 보호
- ① 진료나 검사 시 대기 장소 구분
- ② 진료나 검사, 간호과정에서 환자가 수치감 느끼지 않게 충분히 배려 및 스크린, 커튼으로 가려줌.
- 개인정보 보호
- ① 환자 진료정보가 공용장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(환자확인을 위해 병실 제외)
- ② 환자 개인정보, 진료정보에 대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하지 않도록 한다.

Q: 환자/보호자 질문사항

A: 각각의 문항에 대비

- ① 질병, 치료, 검사, 수술,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본인에게 결정권을 주었는가?
- ② 계획된 진료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의료진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유와 대 안을 설명 들었는가?
- ③ 입원시 직원으로부터 사생활보호를 위한 비밀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받았는가?
- ④ 진료 중에 신체노출이 필요 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진이 배려하였는가?